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. 8. 29 선고 2018가단101983 판결 [부동산매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아산시

변론 종결 2018. 8. 8

판결 선고 2018. 8. 29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라.

피고는 원고에게 47,500,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
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
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 및 아산시 B 토지(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) 등에 관하여 20()1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데,이 사건 부동산 및 관련 부동산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C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1. 11. 22. 직권으로 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하였다.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 부동산에 원룸 또는 상가를 신축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규제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 관련 부동산에만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용적률과 건폐율이 현저히줄어들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여 재산권 침해를 당하였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의 이와 같은 재산권 침해로 인해 금전적,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,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것이고,또한 개발행위 규제 등으로인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약 16년 동안 사용,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금전적,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,원고에게 토지매수대금 3,450만 원,재산상손해금 800만 원,위자료 500만 원,합계 4,750만 원 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, 그러한의무가 발생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,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청구에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고 달리 그에 관한 증거도없다.

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임수희

별지